

# 국립경주박물관 종합감사 결과보고

## 가.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1. 6. 27. ~ 7. 8. (10일간)

■ 감 사 반 : 감사담당관 외 3명

## ■ 감사내용

- 직원 복무·비정규직 운영, 시설관리 및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 실태
- 상설·특별전시, 유물보존관리 및 사회교육 운영 실태
- 장·차관 지시사항 및 감사 지적사항 이행 실태
- 기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및 규정 실태

## 나. 감사결과

(단위: 건, 천원)

합 계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				현지 조치	모범 사례
							주의	시정	개선	통보 등		
건수	금액	인원	건수	인원	건수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12	279		-	-	(1)	279	4	2	2	2	2	-

※ 첨부서류 : 감사처분 요구내용 1부.

# 감사처분 요구내용

## [국립경주박물관]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1	<p>○ 소장유물 관리 및 수장고 출입관리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 상 전시·수장 중요유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전시유물에 대하여 점검일지에 의한 통상적인 이상유무만 점검하고 있음.</li> <li>-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발굴완료 후 2년 이내에 문화재청에 발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73년 발굴한 경주 계림로 고분군 등 70~80년대 발굴유적 5개소에 대한 발굴보고서가 '11년 7월 현재까지도 발간되지 않고 있으며, 동 유적 유물 3,191점도 국가귀속조치 하지 않고 있음.</li> <li>- '수장고 관리일지'에는 모든 출입자에 대한 성명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 수장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음.</li> </ul>	<p>○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유물에 대한 정기적 전수조사 실시</li> <li>- 미 국가귀속 발굴유물에 대한 발굴보고서 발간 및 국가귀속 조치를 2013년까지 완료</li> <li>- '수장고 관리일지' 기록 철저</li> </ul>
2	<p>○ 민간 소유 유물 수탁 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물 안전보관이라는 사적 사유로 기탁한 유물을 수탁</li> <li>- 경순왕 영정 1점만 '11. 7월 중앙박물관의 '초상화의 비밀'에 전시 출품한 이외에 활용실적이 전무하고,</li> <li>- 유물수탁시 유물상태를 명확히 기록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단순 유물명, 수량, 사진을 기록한 수탁증서를 교부하고 수탁하고 있음.</li> </ul>	<p>○ 개선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관리규정」 개정 보완</li> <li>· 유물 수탁기준 및 수탁시 유물상태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규정 개정</li> </ul>
3	<p>○ 외부 강의·회의 등 신고의무 미이행 및 복무관리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행동강령에 의하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에는 기관장에 신고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직원의 경우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신고를 불이행(6건)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출장 처리(4건)하였음.</li> </ul>	<p>○ 주의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자 주의 및 부당 연가 수당 279천원 반납 조치</li> </ul>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4	<p>○ 비정규직 복무관리 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경주박물관 비정규직 운영규정」에 따르면 비정규직 직원들은 근무상황카드를 작성하게 되어있으며, 초과근무 시 초과근무확인대장에 기재 후 당직자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일부 직원의 경우 근무상황카드에 서명을 누락하거나 대필한 의혹이 있고, 초과근무의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관리(한사람이 일괄기재 등)하고 있음</li> </ul>	<p>○ 개선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규직 복무관리 개선</li> </ul>
5	<p>○ 방법·방재설비 운영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주박물관은 방법 및 방재를 위해 전자출입카드를 사용하는 한편, “감시카메라(CCTV) 설치·운용규정”을 제정 활용하면서 화상정보를 180일 동안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li> <li>- 2008. 3월 이후 전자출입카드시스템 상 일부 수장고의 출입일시 기록과 실제 출입일시가 상이한데도 이를 감사 지적 시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li> <li>- 일부 감시카메라(CCTV) 영상기록은 30일밖에 저장되지 않는 등 방법·방재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음.</li> </ul>	<p>○ 주의 및 개선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방재업무 관련자 주의</li> <li>- 관련규정과 근무수칙 마련</li> </ul>
6	<p>○ 직원관사 물품 구매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경주박물관은 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관사를 운영하면서 「직원공동주택 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이에 의거 관사를 관리하고 있으나, 동 규칙에 비품 구입 지원 규정이 없는데도 명확한 근거 없이 개인이 구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청소기를 포함하여 세탁기, 냉장고, TV, 전자레인지, 거실장, 식탁 등을 각각 2개씩 구매하여, ○○○○○○과 ●●●●●● 관사에 비치하였음(11. 1월)</li> </ul>	<p>○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사 물품 및 관사운영 등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li> </ul>
7	<p>○ 외부 사업 수탁 시행 부적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금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없고, 국립경주박물관은 지자체나 민간의 대행사업이나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07년~'10년간 ○○○○ 및 ◇◇◇◇로부터 대행 및 용역사업 명목으로 현금(4건, 총 487,595천원)을 수령하여 보관금 명목으로 보관하면서 이를 해당 사업비로 직접 사용하였음.</li> </ul>	<p>○ 시정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외부 수탁 사업 중단</li> </ul>



연번	지 적 내 용	조 치 사 항
10	<p>○ 미사용 휴대폰 장기보유 부적정</p> <p>- 일본 □□박물관과의 문화교류(연수)시 초청자 편의제공 등을 목적으로 휴대폰을 구입('99. 6월)하였으나, 12년 동안 사용 실적 없이 매월 약정 기본료 13,610원을 지불함으로써 약 3,120천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음.</p>	<p>○ 주의요구</p> <p>- 2006년 이후 휴대폰 관리 및 공공요금 담당자</p>
11	<p>○ 문화행사 예산집행 부적정</p> <p>- 2010년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어린이창극 “박물관속 국악”을 국립민속국악원과 공동추진하면서, 국립민속국악원 직원 6명(무대스텝)의 출장여비(3일분/1,363천 원)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였음.</p>	<p>○ 현지조치</p>
12	<p>○ 당직실 비상연락망 현황판 미정리</p> <p>- 직원 인사이동 시에는 즉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정비하여야 함에도, 2011. 7. 1. 감사 시까지 정비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었음.</p>	<p>○ 현지조치</p>